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509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염정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근

변론 종결2024. 4. 25.

판결 선고2024. 5.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6. 26. 접수 제3005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투자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0652호), 2014.

4. 17. 위 법원으로부터 E이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4. 6.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과 사이에 매매대금 5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위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등기도 무효인바, 원고는 E의 채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784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피압류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임을 추단할 만한 정황으로 피고 C이 E의 부친인 F와 남매사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C과 F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고 C과 F의 부모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형철

판사김용찬

판사이두호

별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답변서에서, 원고가 당초 소장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 바 있으나, 원고가 2023. 6. 5.자 및 2024.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변경한 이상, 변경 전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